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 S. 5881-A/A. 5549-A에 따라 조립식 주택 공원 소유주가 해당 부지 매각을 고려할 경우, 해당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주의 우선 거부권 확대

법안 S. 7541/A. 7403-A에 따라 뉴욕주 모기지관리청은 이동식 또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모기지 구입 및 모기지 풀 보험 제안 가능

법안 S. 7381/A. 7422에 따라 조립식 주택 관련 민사 처벌을 규정하는 뉴욕주법이 연방법과 합치하도록 조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뉴욕주, 특히 업스테이트와 교외 지역의 주민들의 주요한 적정가격 주거원입니다. 법안 S. 5881-A/A. 5549-A에 따라 조립식 주택 공원 소유주가 해당 부지 매각을 고려하거나 공원 매각 제안에 대응하는 경우, 해당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주의 우선 거부권을 확대합니다. 법안 S. 7541/A. 7403-A에 따라 뉴욕주 모기지관리청(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SONYMA)은 이동식 또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모기지 구입 및 모기지 풀 보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 S. 7381/A. 7422에 따라 조립식 주택 관련 민사 처벌을 규정하는 뉴욕주법이 연방법과 합치하도록 조정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조립식 주택 공원에 사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최신의 정책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우리 뉴욕주의 적정가격 주택의 주요한 공급원입니다. 우리는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들이 우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립식 주택에 대한 모기지 및 모기지 풀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며, 연방 프로그램과 우리 뉴욕주의 법적 언어를 통일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적정가격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뉴욕의 가족이 적정가격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이번 법안을 지지해주신 법안 발의자 및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법안 S. 5881-A/A. 5549-A에 따라 조립식 주택 공원 소유주가 해당 부지 매각을 고려하거나 공원 매각 제안에 대응하는 경우, 해당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주의

우선 거부권을 확대합니다. 이전 주법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소유자들은 조립식 주택 공원 구매자가 다른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주택소유주가 공원 구매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60일 내에 조립식 주택 공원 소유주에게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140일 내에 구매 제안을 해야 합니다. 법안은 조립식 주택 공원의 주택소유주들이 조립식 주택 공원에 대한 투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적정가격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James Skouf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를 통해 주민들은 이동식 주택 공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소유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킬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연방 규정과 민사 처벌이 합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립식 주택 공원 소유주와 안정적인 적정가격 주택 주민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Fred Thie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고령자, 고정 소득자, 청년 등 수천 명의 주민이 조립식 주택을 적정가격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공원에서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주택이 있는 곳의 토지를 임대하며, 따라서 그들은 해당 토지 매각으로 부지를 상실하거나 관리 부실 등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는 Skoufis 상원의원과 협력하여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의 “조립식 주택소유주 권리장전(Manufactured Homeowners Bill of Rights)”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택소유주들은 토지 용도 변경에 관계 없이 부지가 판매될 경우 우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매수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주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안 S. 7541/A. 7403에 따라 뉴욕주 모기지관리청은 이동식 또는 조립식 주택의 모기지를 구매하거나 모기지 풀 보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개인 자산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SONYMA 용자 및 보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SONYMA는 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합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모기지관리청(SONYMA)이 표준 모기지가 아닌 개인 대출로 제조 및 모듈식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공공 당국 법안은 주택 및 보험과 같은 관련 비용을 단독 주택 거주를 원하는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동료인 Karen McMahon 하원의원과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쁩니다. 주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 파트너인 정부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법안에 서명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aren McMa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SONYMA는 모듈식 및/또는 조립식 주택의 모기지를 개인 용자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에 따라 저소득 및 중간소득 뉴욕 주민들은 적정가격 주택에 대한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은 뉴욕의 도심, 교외, 외곽 지역사회 등 어느 곳에서든 모두가 공정하게 주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해주신 Comrie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S. 7381/A. 7422에는 조립식 주택 관련 민사 처벌을 규정하는 뉴욕주법이 연방법과 합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 포함됩니다. “벌금”을 “민사 처벌”로, “면허”를 “인증”으로, “조”를 “장”으로 변경합니다. 민사 처벌 관련 용어를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정하는 “최대 민사 처벌”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은 주와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법적 용어의 차이를 바로잡고 조립식 주택이 안전하게 생산, 설치,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Didi Barre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제 지역구 또는 뉴욕주 많은 지역에서 적정가격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해 주정부와 연방 정부 정책을 통일해 약탈적 투자자와 회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